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신인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일러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드리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법직(종) 총 또는 온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준계약을 해지고도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절차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청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청약을 받았일부터 30일)이내 한방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집총서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해하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은 할 때 약관 및 계약자보내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별도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직역유 등 보험료 인출기초에 관한 안내**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최저보증 : 5년내년 연복리2.0%, 5년초과 10년내년 연복리 1.5%, 10년초과 연복리 1.0%) 이 보험의 주계약 보장부분에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3.0%입니다.
- **세제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할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 보험 제외)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준계약을 해지고도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와 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보험상담인원 : 콜센터 1588-2286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소비자 보호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신청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전화: 국번없이 1332 서울분원: 02)3145-5114 부산지원: 051)606-1702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대전지원: 042)479-5151-4 춘천출장소: 033)250-2800 전주출장소: 063) 250-5000 제주출장소: 064) 746-4200 홍주출장소: 043-857-9104 강릉출장소: 033-642-1902 [생명보험협회] 본사(대표전화): 02)2262-6600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70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421-1621, 427-2276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 638-7801-4 [BA영업본부] 02)2002-7458, 7464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iaa.or.kr (생명보험협회)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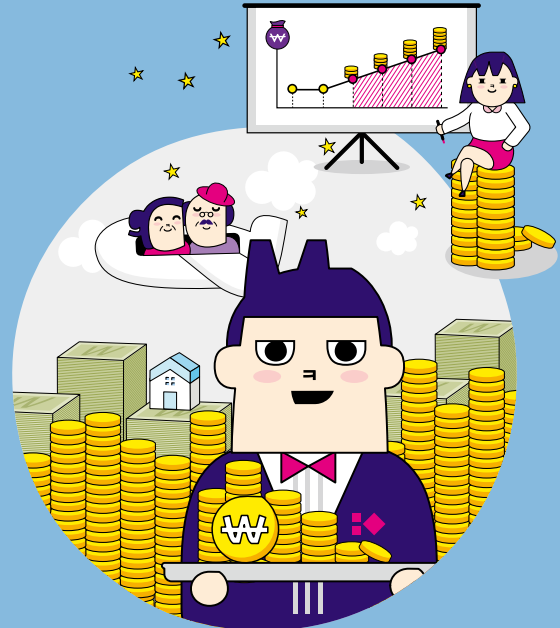
보험사

Heungkuk
Life Insurance

무배당

드림저축보험

1604



주요상품특징

사망보장

자금활용

노후연금



Heungkuk
Life Insurance

- **응국생명 고객연용 콜센터 1588-2286**
- **직원전화 1644-5611**
- **응국생명 BA 영업본부 02-2002-7458, 7464**

응국생명보험주식회사

03184 서울시 중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02-2002-7000 www.heungkuklife.co.kr

제작일자 : 2016. 3. 31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6-FA6-000009(2016.3.24)

상품특징

1.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여 자산운용에 안정성 확보

- 시중금리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2016년 3월 현재 연복리 3.02%)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5년 이내 2.0%, 5년초과10년 이내 1.5%, 10년초과 1.0%

2. 보험료할인/적립금가산 선택가능 (월납계약에만함, 추가납입보험료 제외)

- 1종(3년만기형)
40만원이상: 40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1.0%
50만원이상: 기본보험료의 0.2% + 50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0.4%
100만원 이상: 기본보험료의 0.4%
- 2종(수익형)
25만원이상: 25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1.8%
30만원이상: 기본보험료의 0.3% + 30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1.0%
50만원이상: 기본보험료의 0.7% + 50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0.6%
100만원이상: 기본보험료의 1.0% + 100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0.45%
500만원이상: 기본보험료의 1.3%

3. 최대100세만기 가입가능

- Life-cycle에 따라 생활자금 신청 가능
- 자유로운 추가납입/선납/중도인출

4. 가입시 경험생명표적용

- 고객니즈에 따라 연금(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가능
- 연금전환시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 적용

5. 경제상황에 따른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 보험료납입기간이 50%이상 경과한 계약
- 보험료납입유예: 최대36개월 유예가능
(월단위, 10년납 이상은 5년이상 경과시 가능)

6.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추가납입·중도인출·선납기능

추가납입

-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총 납입한도: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납입가능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기본보험료 x 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 거치형: 기본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납입유예기간'은 '가입후 경과월수'에서 제외함)
* 중도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기타비용만 부과
(최대한도 3만원)

중도인출

- 1회당 한도는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의 70%이내로 연간 12회까지 가능
- 인출수수료: 없음
- * 장래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계약관리비용을 충당할 최소 적립액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선납

- 월납계약에 한하여 당월분포함 12개월까지 선납 가능(5년납이상은 6개월)
- 선납보험료는 보험료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

연금전환·변액연금전환

연금전환

-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후 전환가능(다만, 5년납이상인 경우 5년이후)
- 연금개시나이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85세 이어야합니다.
- 연금전환시에는 가입시의 약관 및 경험생명표를 적용합니다.

변액연금전환

- 전환조건은 연금전환과 동일.
-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변액연금으로 전환
(전환금액은 연금개시시점에 보장)
- 전환후 연금개시 시점까지는 최소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입안내

보험종류 적립형[수익형, 수익형(생활자금), 3년 만기형], 거치형

보험료 납입한도 월납계약 : 매월 10만원 이상(1구좌 : 10만원 ~ 100만원)
일시납계약 : 일시납보험료 300만원이상 ~ 200억원

월납계약

수익형, 수익형(생활자금)

구분		납입기간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50만원이상
5년만기	남자	2년납	-	만15세~74세	75세~76세	77세	78세
		3년납	-	만15세~60세	61세~69세	70세~71세	72세
		5년납	-	만15세~78세	79세~80세	-	-
	여자	2년납	-	만15세~68세	69세~74세	75세	76세
		3년납	-	만15세~75세	76세~77세	78세	79세
		5년납	-	만15세~71세	72세~77세	78세	-
7년만기	남자	2년납	만15세~40세	41세~75세	76세~77세	78세	79세
		3년, 5년납	만15세~71세	72세~77세	78세	79세	-
		7년납	만15세~52세	53세~70세	71세	72세	73세
	여자	2년납	만15세~53세	54세~79세	80세	-	-
		3년, 5년납	만15세~75세	76세~80세	-	-	-
		7년납	만15세~63세	64세~74세	75세	-	-
10년만기			만15세~63세	64세~74세	75세	-	76세
12년만기			만15세~59세	60세~74세	75세	-	-
15년만기			만15세~54세	55세~71세	72세~73세	74세	-
20년만기			만15세~44세	45세~68세	69세~70세	71세	-
30년만기			-	만15세~60세	61세~63세	64세	-
100세만기	2년납	-	만15세~21세	22세~37세	38세~42세	43세~45세	-
	3년납	-	만15세~53세	54세~59세	60세~61세	62세~63세	-
	5년납	만15세~31세	32세~51세	52세~56세	57세~58세	59세	-
	7년납	만15세~36세	37세~48세	49세~51세	52세	53세	-
	10년납이상	만15세~51세	52세~58세	59세~60세	61세	-	-

* 10년납 이상은 15만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 다만, 생활자금형은 전기납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년만기형

구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3년 만기	남자	2년납	-	만15세~76세	77세	
		3년납	만15세~78세	-	-	-
	여자	2년납	-	만15세~80세	-	-
		3년납	만15세~80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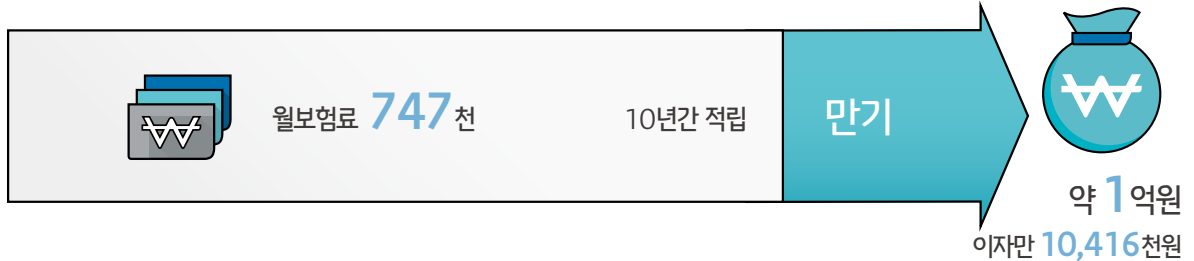
일시납계약

보험기간	3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가입나이	만15세~75세	만15세~79세	만15세~78세	만15세~77세
보험기간	12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30년만기
가입나이	만15세~75세	만15세~72세	만15세~68세	만15세~60세

적립형 납입기간 2년,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30년납

다양한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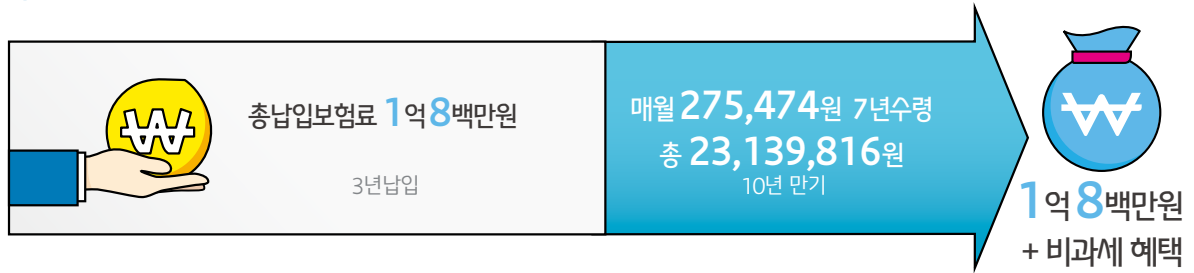
저축플랜 (1억만들기)



[기준 : 여자 40세, 10년납 10년만기, 수익형, 월보험료 747천원, 가산형, 공시이율 연복리3.02% (2016년 3월 기준)]

*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또는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계약일과 상이할 경우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활용플랜



[기준 : 여자 40세, 3년납, 10년만기, 수익형(생활자금), 월보험료 300만원, 가산형, 공시이율 연복리3.02% (2016년 3월 기준)]

* 상기 예시는 공시이율 연복리 3.02%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인출

- 계약자는 계약성립 이후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개시시점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고, 생활자금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납입기간 중 생활자금 신청시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을 최초 생활자금 인출시점으로 하며 매월 계약해당일(만기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3개월단위, 6개월단위, 연단위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초 생활자금 인출시점부터 매3개월, 매6개월,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활자금을 지급 합니다.

- 생활자금인출 후 중도인출시 생활자금인출은 자동 중지되며, 중도인출후 생활자금인출은 재신청 가능합니다.
- 생활자금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만기시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만기시에 만기급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유연한 보험료 납입

어려워도 해지하지 마세요!

거치형
연금전환



(연금전환 조건 충족시 신청가능)

보험료
납입유예



납입기간의 50%이상 경과후 신청
(최대36개월 가능)

만기



보험료 납입유예

- 납입기간의 50%이상 지난 계약(다만, 10년납 이상의 경우 5년 이상 경과)
- 최대36개월 유예가능(월단위 신청 가능)
- 유예기간만큼 납입기간연장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

- 변경 전후 납입기간이 12년이상인 경우

3년만기형 보험료할인 / 적립금가산 혜택

할인조건	지급사유
40만원 < 기본보험료 < 50만원	40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1.0%
5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기본보험료의 0.2% + 50만원 초과한 기본보험료의 0.4%
100만원 ≤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의 0.4%

보장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익형(생활자금), 3년만기형			거치형
		2, 3년납	5년납	7년납이상	
만기급여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직립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 보험료의 200% + 사망당시의 직립액	기본 보험료의 300% + 사망당시의 직립액	기본 보험료의 520% + 사망당시의 직립액	기본 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직립액
생활자금	생활자금개시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생활자금 지급			

주) 「직립액」이란 이 계약의 직립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의 순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납입수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자금인출시점의 직립액에서 “충납입보험료”에 대한 생활자금인출시점 기준 현재까지 금액(장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현재까지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지급횟수로 분할계산한 금액입니다.

직전 1년간 적용이율 변동현황

기준년월	2015.4월	2015.5월	2015.6월	2015.7월	2015.8월	2015.9월
적용이율	3.50%	3.35%	3.30%	3.29%	3.27%	3.25%
기준년월	2015.10월	2015.11월	2015.12월	2016.1월	2016.2월	2016.3월
적용이율	3.10%	3.00%	3.00%	3.00%	3.05%	3.02%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월납계약

[기준: 여자, 40세, 5년납, 10년만기, 수익형, 가산형, 월보험료 100만원 (단위:천원, %)]

경과 기간	실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5년이하 2.0%, 5년~10년이하 1.5%, 10년초과 1.0%)		연복리 3.02%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3.02%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	11,329	94.4%	11,392	94.9%	11,392	94.9%
3년	36,000	35,510	98.6%	36,069	100.2%	36,069	100.2%
5년	60,000	60,662	101.1%	62,248	103.7%	62,248	103.7%
7년	60,000	62,441	104.1%	66,009	110.0%	66,009	110.0%
10년	60,000	65,210	108.7%	72,086	120.1%	72,086	120.1%

일시납계약

[기준: 여자, 40세, 일시납, 10년만기, 일시납보험료 1억원 (단위:천원, %)]

경과 기간	실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5년이하 2.0%, 5년~10년이하 1.5%, 10년초과 1.0%)		연복리 3.02%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3.02%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97,367	97.4%	98,343	98.3%	98,343	98.3%
3년	100,000	100,306	100.3%	103,368	103.4%	103,368	103.4%
5년	100,000	103,362	103.4%	108,698	108.7%	108,698	108.7%
7년	100,000	105,492	105.5%	114,353	114.4%	114,353	114.4%
10년	100,000	108,804	108.8%	123,488	123.5%	123,488	123.5%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6년) 평균공시이율(3.5%)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6년 3월기준 연복리3.02%) 기준으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예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 시 예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예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이나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또는 추가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향후 공시이율이 상승하면 수령액은 증가하고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5년이하 2.0%, 5년초과 10년이하 1.5%, 10년초과 1.0%입니다.

* 상기 예시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만기시점의 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직립액의 인출 및 생활자금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 + 1,000원”을 최저보증 합니다.